

[별표] <신설 2011.1.17>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부문	항목	목표치
1. 주거	가. 주택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나. 난방	1) 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난방비 절감정책 우선 추진
	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등 지원
	라.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제고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제고
2. 교통	가. 대중교통	1)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2)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 대응형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도입
	나.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 이용 가능성 제고
	다. 인도(人道)	도로 정비 시 차도(車道)와 구분된 인도 설치 노력
3. 교육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1)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나.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
	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여건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
	라.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 및 참여 비율 제고
	마. 의견 수렴	교육발전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통로 마련
	바. 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 설치·운영
4. 보건의료	가. 진료 서비스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주요 과목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나. 순회 방문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다. 의약품 구입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 제고
5. 복지	가. 노인	재가노인(在家老人)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나. 청소년	청소년센터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다. 아동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라. 영유아	영유아 보육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마.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6. 응급	가.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나.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도서·벽지에 헬기·선박 등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구축
	다. 소방 서비스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라.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율 제고
	마. 경찰 서비스	신고 접수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7. 문화	가. 독서	도서 열람·대출 가능성 및 편의성 제고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2)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관람·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확충
	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 확충
8. 정보통신	초고속망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제고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